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3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
-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규정(안 제7조)
- 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대상자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

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p>○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p> <p>※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p>						
<p>『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강릉시장 귀하</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별 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비 고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50%	
	나		40%	
	다		30%	
	라		20%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